

2020년도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7.(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90건(안건번호 제2020-19036호~200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9036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OST 음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9037호~19060호는 웹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010호~20011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와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만화 번역본을 제공한 사안임.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5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9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1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총 1,998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24269호~2626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1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99개의 URL 주소는 심의에서 우회 접속 가능 여부가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9개, 총 1,899개의 URL 정보에 관해서는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자의 신고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듦. 중요한 것은 OST 전체가 아닌 일부 분량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음원 전체 분량을 제공했다면 검토 의견이 달라졌을 것이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 일부만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함. 일본은 만화산업, 특히 동인지가 크게 발달한 점을 고려해야 함. 일본은 만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OST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본건 게시자가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 OST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전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 통보한다면 이후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사실상 블로그 전체를 차단해야 할 것임.
- A 위원: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댓글은 찾아볼 수 없음. 다만 광고가 삽입되어 있음.

- A 위원: 티스토리 방명록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2020. 2. 26. 마지막 방명록 글이 작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약 3개 작성되었음.
- A 위원: 게시물 조회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댓글이 달려 있지 않을뿐더러 방명록에 많은 글이 작성되고 있지도 않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B 위원: 과거 심의위원회는 음원 전체 분량이 아닌 일부만 제공하고 있는 건에 대해 어떻게 심의했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OST 음원 전체 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에 대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가결한 바 있음. 하지만 그것이 일부 분량이라면 결과를 달리해야 할 것임.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9036호는 티스토리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OST 음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해당 티스토리에 광고가 삽입되어 있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에도 일부 음원만 사용하는 건수가 상당한 점, 가사 저작물은 모두 게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OST 음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은 지적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함. 부결 의견임.

- A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음원 및 애니메이션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김경숙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19036호는 2인의 위원이 부결 의견, 1인의 위원이 가결 의견임. 시정권고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 의견이 있어야 함. 해당 안전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9037호~1906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3개 게시물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Photoshop',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Office'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대부분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로 자동인증되어 있거나 크랙을 포함하고 있음. 그중 안전번호 제2020-19052호, 제2020-19054호, 제2020-19055호, 제2020-19058호는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Photoshop, After Effect, Premiere Pro, Lightroom, Dreamweaver, Illustrator, Indesign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Adobe Systems)',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 컴퓨터', MS OFFIC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Vegas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소니(Sony Creative Software)', Sketchup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트림블(Trimble Navigation Limited)'은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crobat DC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Adobe Systems)'는 홈페이지에서 7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9037호~1906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9037호~19060호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정권고 심의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행정목적 외에 저작권자의 추정적인 의사 내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C 위원: 상업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가결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9037호~1906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대법원은 “원저작물인 ‘라파예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예트’ dvd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의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의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20010호~2001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불법 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 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 A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20010호~2001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9061호~20009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

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덤더럼(Dumhdurum)'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092호는 2020. 4. 13.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가수 '에이핑크(Apink)'의 앨범 'LOOK'의 타이틀곡임.

(게임 '블랙 메사 Black Mesa'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116호는 2020. 3. 6. 출시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3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제작사와 배급사 모두 Crowbar Collective이며, 정품 판매가 약 20,500원임.

(게임 '울센: 로드 오브 메이햄 Wolcen: Lords of Mayham'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146호는 2020. 2. 13. 출시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85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 판매가 약 41,000원이며 제작사와 배급사 모두 울센 스튜디오임.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Cities: Skylines'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162호는 2015. 3. 10. 출시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정품 판매가 약 32,000원인 게임 프로그램임.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439호는 2020. 4. 23.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제작사는 싸이더스, 배급사는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임. 참고로 2월 26일 극장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어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 확정된 영화임.

- C 위원: 최근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

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안이 많이 발견됨.

- A 위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10만 원 단위의 선결제를 완료해야 함. 선결제 이용자는 다른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게 됨. 일종의 잠김효과가 나타나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492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5. 6.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침해증거자료 수집일은 개봉 전인 2020. 4. 23.임.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495호는 tvN에서 2020. 3. 12. 방영 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블로그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블로그 ‘○○○○○○○○○○○○○○○○○○○○’)에 접속해서 보여주면서)2020. 3. 19.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상단의 게시판 목록을 보면, 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영상, 드라마 등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블로그 운영자가 간접적인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블로그에서 광고를 찾아볼 수는 없었음. 다만 한 달에 약 1,500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업로드 하고 있음.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9713호는 제2020-19492호와 동일한 영상저작물인데,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서 35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의 이용자들이 해당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제2020-19492호 '○○○○○' 웹하드 사이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보임.
- A 위원: 참고로 '○○○○○'는 웹하드 사이트 업계 1위임. '○○○○○' 등의 웹하드 사이트는 영상, 음악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19700호~19724호는 모두 '○○○○○'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사냥의 시간'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모두 유료로 판매 중인 건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대부분 유료로 제공 중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으로 안건번호 제 2020-19061호~2000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9061호~20009호는 모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3

조의3에 따라 시정권고를 가결함.

- B 위원: 데드카피 형 불법복제물들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여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
- A 위원: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20-19061호~2000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903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9037호~2001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7쪽부터 27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6168호~26266호를 제외한, 제2020-24269호~2616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14.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